

[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6-38호]

2026년 상반기 통계조사관 추가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 공고

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근무할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조사관 추가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8일
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

1.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(2명)

응시번호	성명
N1-01700	강○○
N1-01763	고○○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

2. 면접심사 일정

- 일시: 2026. 5. 11.(월) 14:00
- 장소: 서울북부지청 3층 소회의실[주소: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49(번동)]
※ 면접 대기장소: 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
- 대상: 서류심사 합격자 2명

3.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

- 면접시험 대상자는 **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** 면접시작 **10분 전까지 대기장소(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)**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[붙임1] 통계조사관 면접전형 일정 확인
-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지정된 면접일자 및 시간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최종합격자 발표

- 2026. 5. 12.(화)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및 서울북부고용복지+센터, 강북성북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
 - ※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통지

5.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(필수, 주민등록번호 포함)
- 업무 관련 교육(관련 교과목 또는 직업교육훈련) 이수 증명서류 각 1부(해당자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
- 모집 분야와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-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)
 - ※ 장애인 증명서, 복지카드 사본, 상이군경회원증 등
-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서류 각 1부(해당자)
 - ※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-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1부(해당자)
 - ※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- 기타 증빙서류(해당자)

6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- 구비서류는 면접 대기 장소에서 면접 10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(반환청구기간)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※ [붙임 2]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활용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담당자(☎ 02-950-9745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통계조사관 채용 면접전형 일정

면접일시	응시자명단	비고
5. 11.(월) 14:00	강○○ 고○○	13시 50분까지 면접 대기장소 도착

- ※ 면접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면접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면접심사 순서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면접대기장소: 서울북부지청 3층 지역협력과 (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)

[붙임2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